

의안번호	262
------	-----

충청남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

제안자	충청남도지사		제안일자	1997. 12. 11
위원회심사	소관위원회	내무위원회	회부일자	1997. 12. 11
	의결일자	1997. 12. 22	심사결과	수정안가결
본회의심사	회차	제 117 회 임시회 6차 본회의		
	의결일자	1997. 12. 29	심의결과	수정안가결
이송일자	1997. 12. 29		이송기관	충청남도지사
공포일자	1998. 1. 9		공포번호	2693

□ 개정이유

-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최근 개정 공포한 소방법과 소방여건의 변화에 따라 타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중복되는 발전설비·변전 설비 등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이동식난로에 대한 규제 구분을 명확히 함
- 판매시설의 매장 등에 “금연구역”을 표시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국민건강증진 법령에 따르도록 함
-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위험물 임시저장·취급신고제를 신설
- 이동식난로 사용 및 소량위험물 저장 취급기준등 위안에 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함
- 전기사업법령등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효성이 없는 발전설비·발전설비등 17개조문을 폐지하여 종전에 제6장 43개 조문을 제5장 26개조문으로 개정